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693호(號) 1914(大正 3)년 11월 24일

○ 고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560호(號)

일본·만주·러시아 연락운수 여객 및 수하물 임률규칙[日滿露聯絡運輸旅客及手荷物賃率規則] 제1편(編) 제2조(條) 제2항(項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한다.

1914(大正 3)년 11월 24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백작(伯爵) 데라우치 마사타케(寺內正毅)

2. 러시아철도(露國鐵道)의 각(各) 역(驛)에서는 승차·선권 책자(乘車船券冊子) 발매(發賣) 때 러시아적십자사[露國赤十字社]를 위해 승차·선권 책자(乘車船券冊子) 1매당(枚當) 아래[左]의 특별요금(特別料金)을 징수(徵收)한다.

1등 20코페이카[哥·Kopeck]¹⁾

2등 15코페이카[哥·Kopeck]

3등 10코페이카[哥·Kopeck]

1) 역자: 1코페이카는 1루블[留·RUB]의 1/100.